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6 발의연월일: 2021. 2. 18.

발 의 자:임이자·하영제·엄태영

박대수 · 박덕흠 · 백종헌

송석준 • 한무경 • 서범수

추경호 · 홍준표 · 류성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바, 그 중 4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 함.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 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.

이에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있도록 하고,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(안 제48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5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한다)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신 설> 제48조의5(연구활동종사자에 대 한 특례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 험법 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종사자(이하 "연구활동종 사자"라 한다)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한다.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.